

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건 서

(김춘곤 의원 발의)

2024. 12.

서울아리수본부

-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입니다.
-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78호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 구경별기본요금은 수도조례 제31조에 의거 감면되고 있으며,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합니다.
- 그러나, 2008년부터 일반회계 미보전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적 부담 가중과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.
-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조례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고 재난현장에 대한 합법적 지원체계 마련에도 큰 의미가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, 그 내용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
- 또한, 수도요금 감면 내용 중 천재지변 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'25.1.24. 시행 예정인 수도법 제12조의2(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) 신설로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며, 사회재난까지 감면 대상 확대에 의한 시민편익도 크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
-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